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. 5. 31 선고 2023가단3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5. 31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
지상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무허가 단독 주택 1동 72.2㎡를 철거하고,
나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,
다. 2005. 5. 17.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정현서

별지

1) 원고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택한다.